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0.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 대상 중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세제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문화재에 대한 일몰도래 조항의 감면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4조제1항)
- 나.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일몰도래 조항의 감면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5조)
- 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일몰도래 조항의 감면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법」 등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② (생략)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 ----- ----- -----.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 ----- ----- ----- ----- ----- --- 2022년 12월 31일-----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 -----

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
단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
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
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3. (생략)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
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
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하
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
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하
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
려는 자가 2019년 12월 31일까
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

----- 2022년 12월 31일----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
한 감면) -----

----- 2022년 12월 31일----

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 조에 따른 부과액을 제외한다)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 -----
---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 ⑧ 생략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 ⑤ 생략

⑥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2. 31., 2016. 12. 30., 2020. 1. 15.>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

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의 육성과 농산물 가공업, 전통식품산업, 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박피(薄皮)·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19조의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른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2.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3.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 자재·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4.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⑥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⑦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

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⑨~⑪ 생략

소관 실·과		세 정 과
입 안 자	과 장	변 동 석
	담 당	장 인 수
	담 당 자	민 은 심 (480-6852)